

법원행정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 의사록 작성 관련 회신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 및 주주전원 동의서로 가능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관실은 지난 8.16. 우리 협회가 일부 지방회 및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의 등기신청 시 서면결의서 외 의사록도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공증 받는 의사록 대신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내지 서면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회신문에 따르면,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구분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먼저, △서면결의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

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서면동의의 경우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대표자 해임 등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 때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 위의 첨부정보만으로 총주주의 동

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면서 “이때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동수원 등기소, 폐쇄등기부 보관장소 변경

수원지법 폐쇄등기부, 이제부터 ‘장안등기소’에서 보관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폐쇄등기부 보관장소가 지난 9월 13일부터 장안등기소로 변경되었다. 법원행정처는 9월 6일, 동수원등기소의 서고 공간 부족으로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관장소 변경 대상 등기부는 수원지법 동수원등기소 관내 부동산, 공장·광업재단, 선박, 임목, 부부재산악정 등기부 중 종이형태로 작성된 폐쇄등기부(색출장, 공동인명부,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등 등기부의 부속서류 포함)다.